

第195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6.9.19.~9.22.)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95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개회식	141
II. 제19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43
III. 제19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51
IV. 부 록	
1. 의사일정안	159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1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1
4. 조례심사보고서	181
5.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85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6년 9월 19일 (화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第195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신현영)

(11시 00분 개식)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신현영

(11시 02분 폐식)

지금부터 제19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6년 9월 19일 (화요일) 11시 02분

議事日程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9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5. 감사소위원회구성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9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부웅 위원 외 4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제출)
5.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6. 감사소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포함니다.

● 의장 성영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음영호 공보감

사담당관계서는 혁신 비교 해외연수차,

정찬구 과학실업교육과장님께서는 전국

기능경기대회 개막식 참석차, 안세열 시

설과장님께서서는 바이오교육문화회관 현장 설명차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과보고

● 의장 성명용

그러면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정명환

의사과장 정명환입니다.

임시회 소집요구와 의안접수 상황, 도의회 안건 처리상황, 그리고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 9월 8일곽정수 교육위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고, 같은 날 김부웅 교육위원 외 4인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06년 9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제19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회기에 의결된 안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제192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여 집행청으로 이송한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8월 28일 제193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여 집행청으로 이송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9월 15일 제25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및 2006년도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일수연장의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성명용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95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07분)

● 의장 성영용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5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9일부터 9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소위원회를 구성하시겠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과 9월 21일, 2일간은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9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및 2006년도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일수연장의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9일부터 9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9분)

● 의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웅 위원

교육위원 김부웅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5년도 8월과 2006년도 2월에 각각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교육위원의 회의 참석 일수에 따라 지급하던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새로 신설된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등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 회기수당 지급을 월정수당 지급으로 조문 전체를 개정하여 교육위원회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매월 120만원씩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회기수당의 폐지에 따라 제7조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규정 중 일비가 2006년 1월 12일에 인상됨에 따라 제8조 여비 지급 기준에서 별표 1의 교육위원 국내여비 일비를 종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하고 별표 3의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 대상 지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및 신규 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2)

(끝에 실음)

● 의장 성영용

김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부웅 교육위원외 4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조례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하신 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3분)

● 의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신강택입니다.

존경하는 성영용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

령의 개정으로 교육위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 및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 안 제9조 제2항의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심의위원장의 직무중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하여 법령에서 통상 사용되는 용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3)

(끝에 실음)

● 의장 성영용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 15분)

● 의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소위원회 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소위원회회구성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은 즉시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감사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 16분)

● 의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감사소위원회구성의를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195회-제1차 본회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감사소위원회구성건의는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감사소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시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 기간중 5일 이내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교육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 분석을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대안도 제시를 하고 바람직한 사항은 더욱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는 교육위원회의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구체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소위원회에서 수립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9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김부웅 위원님과 박노성 위원님께서 수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9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성영용, 부의장 곽정수,
위원 김병우, 김부웅, 박노성, 서수웅, 박노성.

0 출석공무원 : 12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서명범, 교육국장 박의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혁신복지담당관 구명희,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교육정보화과장 이재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총무과장 신건환,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2)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3)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6년 9월 22일 (금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4. 2006년도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일수연장의건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부웅 위원 외 4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제출)
3.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감사소위원회위원장)
4. 2006년도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일수연장의건 (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 의장 성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이기용 교육감님께서 교육혁신위원회 주관 학술세미

나 참석차,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계서는 혁신 비교 해외연수차, 정찬구 과학실업교육과장님께서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석차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

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 **의장 성영용**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조례 개정을 위한 추진과정 및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사전 협의를 거친 바 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 **의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곽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곽정수**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곽정수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1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9월 19일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 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육위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위원회에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 기준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용어의 정의 및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안 9조 2항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안 12조 2항 중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취지 및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으로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4)

(끝에 실음)

● 의장 성명용

곽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1시 06분)

● 의장 성명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소위원회 이상일 위원장님께서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소위원회위원장 이상일

감사소위원회 위원장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작성 승인 요청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발의사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 제11조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및 그 산하 기관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교육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며, 바람직한 사항은 더욱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도교육청의 국정감사 실시로 10월 17일을 제외한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와 10월 23일, 4일간으로 하고 그 일정별 대상기관은 10월 16일 충청북도옥천교육청, 10월 18일 충청북도제천교육청, 10월 19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 10월 23일 충청북도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청취, 질의 및 답변, 관련 서류의 검토 등을 통하여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 대상 기관별로 기관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였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행정감사 자료요구는 2006년 10월 9일까지 교육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견(별첨 5)

(끝에 실음)

● 의장 성명용

이상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감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협의를 거쳐 작성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견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일수연장의건

(11시 11분)

● 의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일수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가 오늘 폐회하게 되면은 올해 연간 회의일수 50일중 33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10월에 개최될 정기회 회기가 19일간을 예정하고 있어 50일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남은 기간중에 제출되는 각종 안건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일간을 연장하여 앞으로 각종 안건 심의에 필요한 회의일수를 미리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일수연장의건은 본인이 제의한 바와 같이 10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일수연장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19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폐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성영용, 부의장 곽정수,
위원 김병우, 김부웅, 박노성, 서수웅, 이상일.

0 출석공무원 : 1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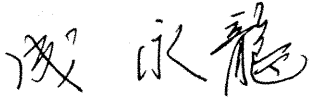
부교육감 서명범, 교육국장 박의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혁신복지담당관 구명희,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교육정보화과장 이재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총무과장 신건환,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4)
- ▶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별첨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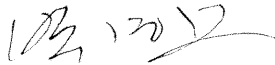
제19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6. 10. .

의 장 성 영 용 

위 원 김 부 웅 

위 원 박 노 성 

의사국장 박 경 석 

(별첨 1)

의 사 일 정 (안)

제19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2006. 9. 19.~9. 22.(4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9월 19일(화) 11: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1. 제19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6. 9. 19. ~ 9. 22. (4일간)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5. 감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input type="checkbox"/> 산 회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 감사소위원회	제안설명 제안설명
9월 20일(수)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본회의 휴 회
9월 21일(목)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감사소위원회	본회의 휴 회
9월 22일(금) 11: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4.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일수 연장의 건 <input type="checkbox"/> 산 회 <input type="checkbox"/> 폐 회	

(별첨 2)

의안번호	제 195-1 호
의 결 연 월 일	2006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부응위원 외 4인
발의연월일	2006년 9월 8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5 - 1
----------	---------

발의연월일 : 2006. 9. 8.
발 의 자 : 김부용,곽정수,
김병우,박노성,
서수용 (5인)

제안이유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법률 제7670호, 2005.8.4)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322호, 2006.2.8)의 개정으로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새로 신설된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내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 지급되는 월정수당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현행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여 소속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월정수당은 월 1,200,000원으로 함 (안 제3조)
- 제7조(회기수당 지급기준) “삭제”
- 별표 1(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중 일비 10,000원을 20,000원으로 조정

참고자료

- 가. 관계법령 발췌
- 나. 충청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통보 내용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위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은 월 1,200,000원으로 한다. 단, 1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의 월정수당은 매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의 일비 “10,000원”을 “20,000원”으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별표 1]

현 행								개 정 안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 장 부의장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10,000	46,000	25,000	의 장 부의장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20,000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위 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10,000	46,000	25,000	위 원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20,000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비고 : 1.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 을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2. 지방자치법 시행령 또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국내여비지급기 준이 조정된 때에는 이 표를 개정 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또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비고 : (현행과 같음)							

[별표 3]

현 행		개 정 안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대상지역 (제7조제3항 관련) (단위 : 킬로미터)		<삭 제>
시·군별	대 상 지 역	
충주시	동일원(71.0), 상모면(80.7), 살미면(71.7), 소태면(94.8), 엄정면(85.8), 산척면(85.8), 동량면(81.8), 금가면(83.8), 가금면(81.8), 양성면(77.8), 노은면(69.8), 신니면(63.8),	
제천시	동일원(118.9), 봉양읍(109.2), 백운면(120.9), 송학면(129.0), 청풍면(129.7), 금성면(130.2), 수산면(116.0), 한수면(124.7), 덕산면(109.4)	
보은군	산외면(64.3), 외속리면(63.2), 내속리면(66.1), 삼승면(66.1) 탄부면(67.2), 마로면(70.1)	
옥천군	동이면(63.4), 안남면(74.2), 안내면(72.1), 청성면(75.8), 청산면(77.5), 이원면(64.6), 군서면(60.6)	
영동군	영동읍(83.4), 용산면(87.2), 황간면(100.0), 추풍령면(108.0), 매곡면(104.9), 상촌면(110.7), 양강면(87.4), 용화면(113.4) 학산면(97.7), 양산면(100.9), 십천면(74.0)	
괴산군	장연면(65.6), 연풍면(70.4), 불정면(62.2)	
음성군	생극면(60.5), 감곡면(71.6)	
단양군	단양읍(143.5), 매포읍(155.6), 단성면(154.7), 대강면(155.4) 가곡면(150.7), 영춘면(164.4), 어상천면(164.8), 적성면(168.6)	

관계법령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방자치법의 준용) 지방자치법 제5조, 제2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3조, 제59조 내지 제68조, 제74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교육위원"으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의회"·"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준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5조의5, 제17조의2, 제17조의4 내지 제19조, 제19조의3, 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지방의회 의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5에 의한 금액
 2. 여비 : 별표 7 및 별표 8에 의한 금액
 3. 월정수당 :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통보 내용

- 의정활동비 : 월 150만원(연간 1,800만원)
- 여 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7 및 별표8에 규정한 범위
- 월정수당 : 월 120만원(연간 1,440만원)

(별첨 3)

의안번호	제 194~200호
의결 연월일	2006년 9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6년 9월 // 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1~2
----------	-------

제출연월일 : 2006. 9.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육위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 및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 함.(안 제2조, 제4조제1항)
- 나. 법령에서 통상 사용되는 용어로 변경 함.(안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 (1)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
 - (2)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변경

참고자료

- 가. 관계법령 발췌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하고,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14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준용)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회기수당”을 각각 “의정활동비”로 한다.

제5조제1항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 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지방자치법 제32조의2 준용)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이하 “교육위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u>」----- ----- 「<u>지방자치법</u>」----- ----- 「<u>지방자치법 시행령</u>」 제15조의3-----</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회기수당”이라 함은 영 제14조(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준용) 규정에 의한 회의수당을 말한다.</p> <p>3. (생략)</p>	<p>제2조(정의) -----</p> <p>-----</p> <p>1. (현행과 같음)</p> <p>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14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준용)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p> <p>3. (현행과 같음)</p>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p>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p> <p>-----</p>

<p>망의 경우는 교육위원 당해 연도 <u>회기수당</u>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p>	<p>-----<u>의정활동비</u>----- -----</p>
<p>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교육위원 당해연도 <u>회기수당</u>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되, 제5조에 규정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p>	<p>2. ----- ----- <u>의정활동비</u>----- ----- -----</p>
<p>3. (생략) 제9조(교육위원상해등보상심의회 의 구성) ① (생략)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중 1인은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이 되며, 나머지 3인은 <u>다음 각 호의 1</u>에 해당하는 자중 교육감이 위촉한다. 1. ~ 3. (생략) ③ (생략)</p>	<p>3. (현행과 같음) 제9조(교육위원상해등보상심의회 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심의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②위원장이 <u>사고가 있을 때에는</u>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2조(심의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u>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u>----- -----</p>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상해·사망등의 보상) ①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직무 (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 지방의회의원 1인
2.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1인
3. 의무직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④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방자치법의 준용) 지방자치법 제5조, 제2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3조, 제59조 내지 제68조, 제74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교육위원"으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의회

“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준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5조의5, 제17조의2, 제17조의4 내지 제19조, 제19조의3, 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지방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본다.

(별첨 4)

제195회 임시회

조례 심사 보고서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 9. 2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9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6년 9월 19일,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6년 9월 19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6년 9월 20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육위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위원회에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 함.(안 제2조, 제4조제1항)
- 법령에서 통상 사용되는 용어로 변경 함.(안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 (1)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
 - (2)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변경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심사보고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육위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 기준을 이에 맞도록 개정 하고자, 용어의 정의 및 보상금 지급 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안 제9조 제2항 중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안 제12조 제2항 중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 취지 및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6. 9. 22.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곽정수



간사

김병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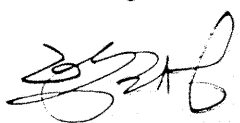


위원

김부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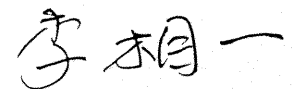
박노성



서수웅



이상일



(별첨 5)

의안번호	제195-3호
의결 년월일	2006. 9. . (제 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발의자	감사소위원회위원장
발의년월일	2006. 9. 2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의안 번호	제195-3호
----------	---------

발의일자 : 2006. 9. 21.

발 의 자 : 감사소위원회위원장

1. 발의사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감사의 목적

충청북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교육행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교육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바람직한 사항은 더욱 심화·발전시킴으로써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감사기간 : 4일간

2006. 10. 16.(월) / 2006. 10. 18(수)~10. 19.(목) / 2006. 10. 23(월)

(※ 2006. 10. 17. 도교육청 국정감사)

다.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

- (1) 2006. 10. 16.(월) 14:00, 충청북도옥천교육청
- (2) 2006. 10. 18.(수) 10:00, 충청북도제천교육청
- (3) 2006. 10. 19.(목) 10:00, 충청북도청주교육청
- (4) 2006. 10. 23.(월) 10:00, 충청북도교육청

라. 감사소위원회 구성 : 의장을 제외한 교육위원 6명

마. 감사요령

감사는 감사대상기관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청취, 질의 및 답변, 관련 서류의 검토 등을 통하여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함.

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1) 감사대상기관별 출석대상

- 도교육청 : 교육감, 부교육감, 과장급 이상 공무원
- 지역교육청 : 교육장,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출석일시 및 장소

- 일 시 : 감사세부일정에 의한 해당감사일
- 장 소 : 감사세부일정에 의한 해당감사장소

※ 붙임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006. 9.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90
2. 감사기간	190
3. 감사대상 기관	190
4. 감사소위원회 구성 및 관계공무원 지정	190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191
6. 감사자료 요구	191
7. 감사요령	191
8.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192
9. 행정사항	192

※ 붙임 내역

○ (별첨1) 감사장 좌석 배치도	194
○ (별첨2) 출석공무원 명단(서식)	196
○ (별첨3) 증인선서문	197
○ (별첨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내역	198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근거 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방자치법 제36조 준용)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1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1. 감사의 목적

충청북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교육행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교육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도출된 문제점등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바람직한 사항은 더욱 심화·발전시킴으로써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기간(4일간)

- 2006. 10. 16.(월), 2006. 10. 18(수)~10. 19.(목)/ 2006. 10. 23(월)
(※ 2006. 10. 17. 도교육청 국정감사)

3. 감사대상 기관 (4개 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청, 충청북도제천교육청, 충청북도옥천교육청

4. 감사소위원회 구성 및 관계공무원 지정

가. 감사소위원회

직 위	성 명
위 원 장	이상일
간 사	김부웅
위 원	곽정수, 김병우, 박노성, 서수웅

나. 관계공무원 : 의사국 직원 6명

- 의사국장, 의사과장, 의사담당, 6급 1명, 7급 1명, 속기사 1명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차수	일 시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1	2006.10.16.(월)14:00	충청북도옥천교육청	충청북도옥천교육청 회의실
2	2006.10.18.(수)10:00	충청북도제천교육청	충청북도제천교육청 회의실
3	2006.10.19.(목)10:00	충청북도청주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청 회의실
4	2006.10.23.(월)10:00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강당

6. 감사자료 요구

가. 2006년도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 보고서

나. 감사 자료요구 내역 : (별첨4)

7.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감사는 감사대상기관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청취, 질의 및 답변, 관련 서류의 검토 등을 통하여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한다.

나. 감사진행 순서

진행순서	비고
<input type="checkbox"/> 감사실시 선언 <input type="checkbox"/> 위원장 인사 <input type="checkbox"/> 증인선서 <input type="checkbox"/> 피감사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input type="checkbox"/>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input type="checkbox"/> 질의 및 답변 <input type="checkbox"/> 감사종료 선언	- 10분 이내 - 질의 후 정화

8.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가. 감사대상기관별 출석대상

- 도교육청 : 교육감, 부교육감, 과장급이상 공무원
- 지역교육청 : 교육장, 과장급이상 공무원

나. 출석일시 및 장소

- 일 시 : 감사세부일정에 의한 해당감사일
- 장 소 : 감사세부일정에 의한 해당감사장소

9. 행정사항

가. 4쪽(6항)의 감사 자료요구에 대하여

-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피감사기관별로 10부를,
- 각 위원별 요구서에 의한 감사자료는 전 위원 통합분 3부, 위원별 발췌분 각 1부씩을,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자료(교육청 요람, 주요업무추진계획) 등은 10부씩을 작성하여 **10. 9.(월) 12:00까지** 제출

나. 대외에 공개될 경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무원의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대외비 : 비공개자료** 표시 제출

다. 감사장 준비

- 좌석배치 : (별첨1) '감사장 좌석배치도' 참조
- 명패준비 : 위원장, 위원, 기관장, 기자석 등
- 방송설비 : 마이크는 위원장석·감사위원석·기관장석·발언대에 각 1개씩 설치
- 녹음준비 : 녹음장비 및 카세트 테이프 준비
(※ 녹음불량 사례 없도록 주의)
- 출석대상 공무원 명단 : (별첨2)서식에 의거 감사당일 감사위원 및 감사 진행 보좌직원 좌석에 배부

라. 기타 지원요청 사항

- 충청북도교육청
 - 감사위원 이동용 버스 1대 지원(2006. 10.16.~10.18./ 10.23)
- 공통사항
 - 속기석에 3구용 멀티탭 배선(속기장비 연결용)
 - 의사국 직원석(보조)에 노트북, 프린터 각 1대씩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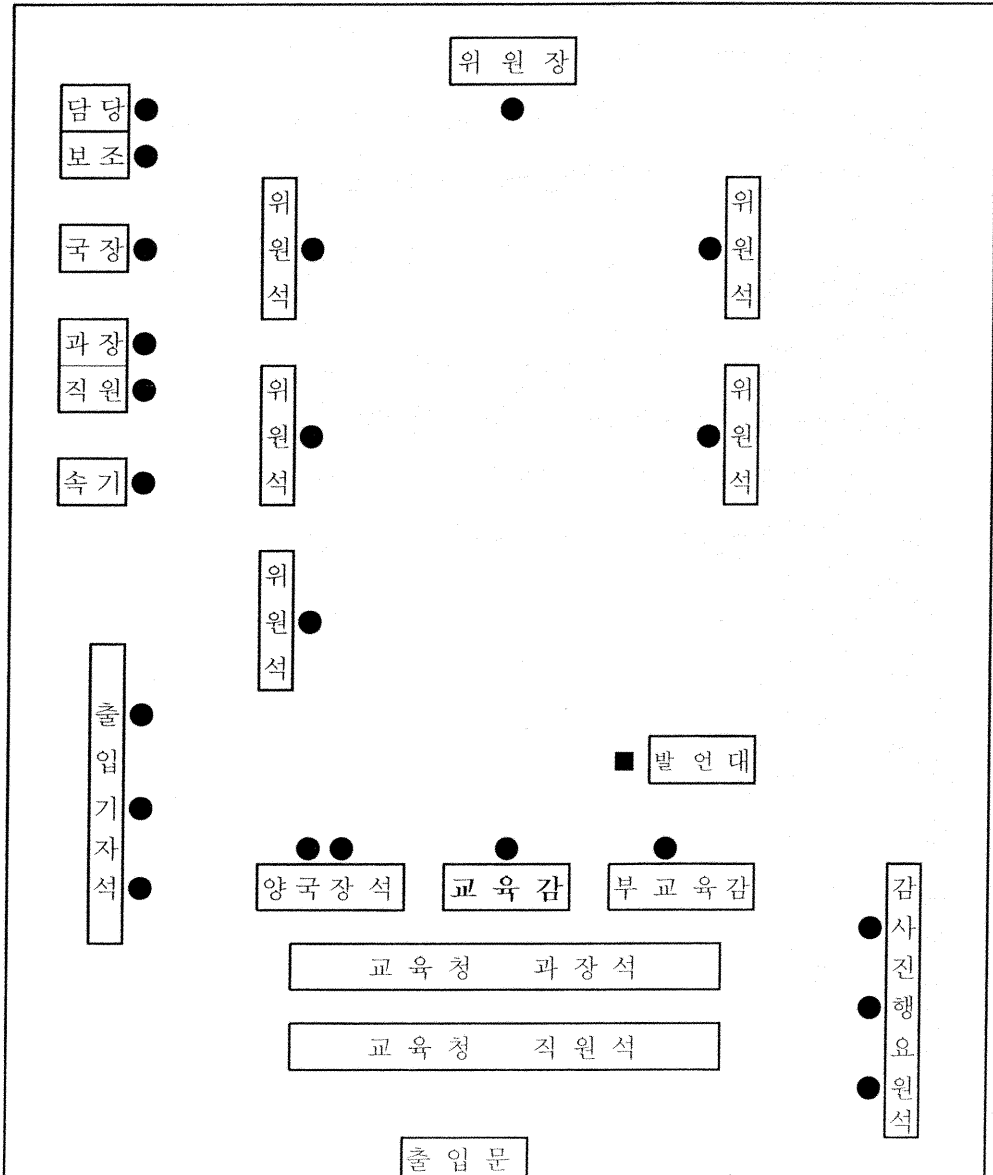
※ 붙임 내역

1. (별첨1, 1-1) 감사장 좌석 배치도 1부.
2. (별첨2) 출석공무원 명단(서식) 1부.
3. (별첨3) 증인선서문 1부.
4. (별첨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내역 1부.

(별첨1)

감사장 좌석 배치도

<도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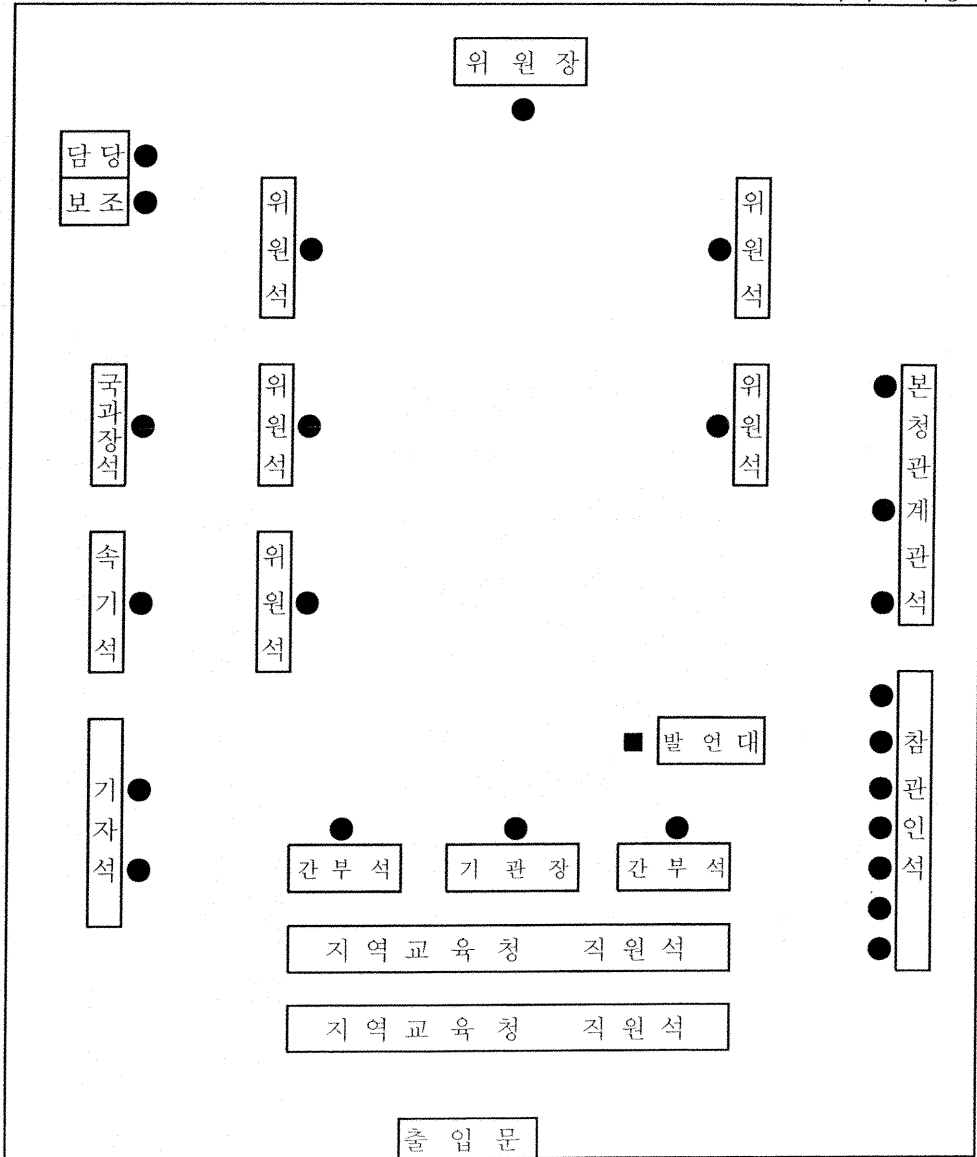


※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별첨1-1)

감사장 좌석 배치도

<지역교육청>



※ 기관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별첨2)

출석공무원 명단

□ 기관명 :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 성명 : 한자로 기재

(별첨3)

선 서

본인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6년 10월 일

기관명 :

선서인 : 직 성명 (인)

(별첨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내역

□ 요구위원 : 객정수 위원

1. 초빙교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가. 도내 초빙교 운영 현황

(단위 : 명)

교육청명	학교급별	전체학교수	초빙교 학교수	비고
	초			
	중			
	고			
	계			

나. 초빙교 운영 확대 방안

2. 교원 승진제도에 따른 인문계고 교원 가산점 부여 여부 및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 도교육청

3. 단체협약안을 검토해 보면 학교장 자율 경영, 업무 특성상 행정업무로 취급되는 사례 중 불필요한 협약 내용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 업무 내용과 행정실 업무 내용중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사전 조율하는 방안은 무엇이며 제도화 할 수 없는지 : 도교육청

4. 저출산으로 국가의 미래가 직결되고 경쟁력이 저하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바 이에 따른 출산 장려 대책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탁아방을 시·군별로 시범 운영 할 수 있는 방안 : 도교육청

5. 청주시내 초·중·고등학교(기존교)와 신설학교의 공공요금 예산액 및 집행현황 : 도교육청

연도별	학교급별	학급수	기존학교		신설학교		비고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초	30학급이상					
		40학급이상					
	중	30학급이상					
		40학급이상					
	고	30학급이상					
		40학급이상					

<작성요령>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2개교를 선정하여 표본조사
 - 30학급이상 : 1교, 40학급이상 1교
- 작성기간 : 2004년, 2005년, 2006년 8.31.현재

6. 청주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현황 : 도교육청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1학년			2학년			3학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											
.											
계											

<작성요령>

- 학교별로 작성

7. 교육위원회 학교신설 승인에 따른 설립 추진 현황 : 도교육청

교육청명	연도별	학교명 (가칭)	개교 시기	완성학급	추진현황			비고
					정상	미추진	미추진 사유	

<작성요령>

- 2004년~2006년 현재
- 정상 또는 미추진 해당란에 ○표 하고, 미추진 경우 사유기재

8. 초등 신규교사 및 전입교사 배치현황 : 청주교육청

가. 12학급 이하교

학교명	구 분		교원수		신규임용		전입교원		비고
	연도별	학급수	남	여	남	여	남	여	
	2004								
	2005								
	2006								

나. 24~30학급교

학교명	구 분		교원수		신규임용		전입교원		비고
	연도별	학급수	남	여	남	여	남	여	
	2004								
	2005								
	2006								

다. 48학급 이상교

학교명	구 분		교원수		신규임용		전입교원		비고
	연도별	학급수	남	여	남	여	남	여	
	2004								
	2005								
	2006								

라. 신규교사 배치기준 및 지침이 있으면 제출

8-1. 초등 신규교사 및 전입교사 배치현황 : 제천·옥천교육청

교육청명	학교명	구 분		교원수		신규임용		전입교원		비고
		연도별	학급수	남	여	남	여	남	여	
		2004								
		2005								
		2006								

<작성요령>

- 전체학교 작성

9. 충청북도학생종합 수련원 운영 현황 : 도교육청

가. 2005년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금액	비율

나.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세입			세출					비고
	사용료	...	계	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	계	
예산액									
구성비									

다. 직원현황

(단위 : 명)

구분	원장	전문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파견교사	...	계
현원	진천							
	보령							
	계							

라. 학생수련 활동실적(2005~2006. 현재)

(단위 : 명)

구 분	학교급별	2005년도			2006년도 현재			비고
		학교수	이용 인원(명)		학교수	이용 인원(명)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야영수련활동	초							
	중							
	고							
	계							
임해수련활동	초							
	중							
	고							
	계							

마. 건의 및 요망 사항 :

10. 충청북도바이오교육문화회관 신축 추진현황 : 도교육청

가. 위 치 :

나. 공사 추진 현황 :

(단위 : 천원)

계약자			계약금액	공 정			공정율	비 고
주 소	상 호 명	대표자		착공	준공(예정)	공기		

다. 시설현황 :

(단위 : m², 실)

건물면적		시설현황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Bio전시관	계	

라. 투자예산 및 직원 확보계획 :

(단위 : 천원, 명)

예산액			직원 확보 계획		
국 고	지방비	계	관장	직원	비 고

<작성요령>

- 직원 확보계획 중 “비고” 란에 자세히 기재

마. 주요업무 추진 계획 :

11. 최근 2년간 교원 징계 내용과 처리현황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교육청명	연도별	일 시	성명	사건명	처분일자	행정처분	비고

□ 요구위원 : 김병우 위원

1. 산남3지구 교육연구시설 부지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 도교육청

가. 용지확보과정 및 당초 활용 계획

나. 청주교육청 이전 등 용도변경 및 향후 계획

2. 농촌 소재학교와 관련하여 : 도교육청

가. 농촌 우수교 자율학교 지정 및 지원 내역, 지원금 활용방안

(단위 : 천원)

지역별	학교명	지원 현황		활용방안	비고
		내역	금액		

3. 학생인권신장 관련 각종계획 및 조치 실적(2005~2006. 현재) : 도교육청

4. 교원 평가 시범학교 운영 보고자료 : 도교육청

5. 2005~2006.현재 학교별 교원성과급 심의위원회 구성현황, 평정기준(평가요소), 이의제기 및 재심의 사례 : 도교육청

6. 2006년도 교직원 여비규정(개정) 적용실태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 ○ 교육청

학교명	구분	관내 출장(원)			관외출장(원)						
		정액	실 지급액	지급율	학교→청주			학교→단재교육연수원			
					정액	실 지급액	지급율	정액	실 지급액	지급율	
	교장										
	교감										
	교사										
	행정실장										

7. 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 도교육청

가. '05~'06년 지자체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교육청명	연도별	지원기관명	지원일자	지원 사업명	지원금액	비고
	2005					
	2006					
	계					

<작성요령> 도교육청은 도내 전체현황 작성

나. '05~'0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식비 지원현황

교육청명	연도	학교 급별	인원	1인 지급액	계	지급방법	
						학기중	방학중
		초					
		중					
		고					
		계					

다. '05~'06년 차상위계층(나. 항외) 중식비 지원현황

교육청명	연도	학교 급별	인원	1인 지급액	계	지급방법	
						학기중	방학중
		초					
		중					
		고					

8. 2005~2006. 도내 여교사 보건휴가 사용실적 : 도교육청

(단위 : 명)

교육청명	연도	학교 급별	교원수	보건휴가 사용실적		
				여교사 수	사용자 수	사용일수
		초				
		중				
		고				

9. 교육행정직 인사 관련 제 규정 및 각종 지침 제출 : 도교육청

10. 각급 학교별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가. 학교별 비정규직 현황

(단위 : 인원수)

교육청명	학교급별	직종별 인원수				
		조리종사원	실험보조원	교무보조원	...	계
	초					
	중					
	고					
	계					

나. 급여액 책정기준 및 지침

다. 처우개선 및 향후 대책

11.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하여 : 도교육청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이후(2003년 이후)충청북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 경상교부금, 특별교부금, 지방교육세 추이

나. 지방채 등 교육청 채무관련 현황

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학생수용 및 학교설립지원 기준에 따른 이후 3년간(2007~2010) 학급수 조정 시뮬레이션(Simulation) :

『 2004~2006년간 학급당 학생수 포함(학교급별)』

12.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 도교육청

가. 환경과목(선택교과) 채택 학교, 지도교사, 환경동아리 현황

교육청명	학교급별	환경과목(선택교과)채택 현황				비고
		전체학교수	채택학교수	지도교사수	환경동아리수	
	초					
	중					
	고					
	계					

13. 예술문화교육 관련(2005~2006.현재)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가. 문화예술교육활성화종합계획(2004.11.25) 및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2005.12.29)에 따른 도교육청 차원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실적

(단위 : 학교수, 천원)

교육청명	학교급별	지원실적			비고
		전체학교수	지원학교수	지원금액	
	초				
	중				
	고				
	계				

나. 문화예술 교육관련 교사연수실적

(단위 : 명)

교육청명	학교급별	연수실적		비고
		전체 교원수	연수교원수	
	초			
	중			
	고			
	계			

다. 도내 학교에서 학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프로젝트 참여 현황

교육청명	학교급별	참여 현황		비고
		전체 학교수	참여학교수	
	초			
	중			
	고			
	계			

14. 2006년 현재 주요 학교폭력 사건 처리 경과(5건) : 도교육청

※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수사기관에 의뢰된 사건 등

15. 향후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 (對교원노조, 對공무원노조) : 도교육청

16. 학교별 수학여행 인솔교사 출장비 지급 내역 (최근사례)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명	여행지	기간(○박○일)	1인지급액	항목별 내역		
				숙박비	식비	...

17. 학교 체육과 관련하여 : 도교육청

가. 각급 학교 운동부 현황

교육청명	구 분		운동부 현황		비고
	학교급별	학교명	종목별	선수인원	
	초				
	중				
	고				
	계				

나. 코치 및 합숙소 현황(교육부 보고 서식)

다. '학생선수보호위원회' 및 '선수고충처리센터' 운영 실적

라. 운동선수 수업실태(수업내실화 추진 현황)

18.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2005~2006.현재) : 도교육청

가. 2007년 이후 학교급식방법 직영으로의 전환계획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작성요령>

○ 연도별 학교명 기재

나. 최근 3년간 학교급식 시범학교 운영 내역

다. 친환경 급식 시행 사례

라. 학교급식종사자 교육 실적

시·군별	구분	교육 현황			비고
		종사자 인원수	횟수	교육 인원수	
	초				
	중				
	고				
	계				

<작성요령>

○ 작성기간 : 2005~2006 현재(연도별 별지작성)

마. 명예검수단,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실적

19. 각종 교권 사고 관련 교육감에게 보고한 문건 및 지시사항, 처리결과 : 도교육청

가. '05년도 옥천여중 사건 관련

나. '06년도 한별초 사건 관련

다. '06년도 문백초 민원 관련

라. '06년도 제천중앙초 이영호 교사 관련

20. 옥천 삼양초 분리 계획과 관련하여 : 옥천교육청

가. 관련 계획의 경과, 이후 대책

나. 최근 3년간 옥천 관내 면단위 이하 지역에서 읍내로 유입(전학)한 학생수
(삼양초, 죽향초)

21. 청주교육청 '06 독서교육 계획 및 실적 : 청주교육청

□ 요구위원 : 김부웅 위원

1.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전보 내신제 권고 실태(2005, 2006 현재)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교육청명	구 분	2005년		2006년		계	
		일반직	기능직	일반직	기능직	일반직	기능직
	발령인원						
	기능직공무원						
	희망부서배치인원						

<작성요령>

- 연도별 전보 발령한 인원수 기재
 - 도교육청에서는 도내 전보발령 인원 기재
 - 지역교육청에서는 관내전보 발령 인원 기재(A교 →B교)

2. 시·군간 교원 전보순위의 지역교육청 적용문제 대하여(2005, 2006 현재) : 도교육청

구 분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음성	괴산 증평	단양	계
적용여부 (O,X)												
비적용인원												
인사감사시 지적건수												

<작성요령>

- 비적용 인원 : 연구학교, 특기담당자등 적용치 않은 수를 기재
- 순위명부 비적용에 대한 감사 지적 건수

2-1. 적용여부에 대한 의견

<작성요령>

- 적용의 장·단점 기재
- 남녀 및 연령분포 고려 배치
- 학교장 전입요구 수용여부

3. 교육인적자원부, 도지정, 연구·시범·실험학교의 지정시기 실태 : 도교육청

연도별	지정구분	학교명	지정일자	담당인력 확보현황	
				확보인원	인사발령일자

<작성요령>

- 작성연도 : 2004~2006년 현재
- 지정구분 : 교육인적자원부지정, 도지정, 타부처 지정 등
- 학교명 : ○○초, ○○중, ○○고 등으로 기재
- 지정일자 : 지정을 통보 받은 날
- 확보여부 : 정기인사 발령 후 연구 추진을 위한 담당교사 인력 확보여부

3-1. 연구학교 지정을 12월 말까지 지정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4. 신규 임용교사의 초임 호봉 확정 문제에 대하여 : 도교육청

가. 신규교사 임용시 초임 호봉을 확정하는데 법상 전력조회 기간이 2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급여자료는 1주일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바, 인사담당 부서에서 초임 호봉을 조기에 확정하는 방안은

5. 단설유치원 설립 현황 : 도교육청

시·군별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음성	괴산 중평	단양	계
유치원명 설립연도												
향후설립 계획연도 및 유치원수												

<작성요령>

- 유치원명 설립연도 : 산남(2005)등으로 기재
- 향후 설립계획 연도 및 유치원수 : 2007(1), 2008(2) 등으로 기재

5-1. 단설유치원 조무원 배치 현황 : 도교육청

교육청별	유치원명	조무원 현황		비고
		단독배치 인원수	겸임배치 인원수	

5-2. 유치원(단설, 병설) 에듀케어실 현황 : 도교육청

교육청별	유치원명	에듀케어실수	비고

6. 유치원 교육비 지원 방안에 대하여 : 도교육청

가. 2005년~2006년 유아교육비 지원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취원아수(A)				지원아수(B)			
	만3세	만4세	만5세	계	두자녀	만3·4세	만5세	계
공립								
사립								
계								

구분	지원금액(C)				1인당지원금액(D=C/B)			
	두자녀	만3·4세	만5세	계	두자녀	만3·4세	만5세	계
공립								
사립								
계								

<작성요령>

○ 2005년~2006년 별지 작성

나. 공·사립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격차를 줄이는 방안과 공립유치원 기피 현상을 해결하는 방안은

7. 초등학생 무료급식비 지원 현황 : 도교육청

시군별	총학생수	무료급식지원		비고
		학 생 수	지원율(%)	
청 주				
충 주				
계 천				
청 원				
보 은				
옥 천				
영 동				
진 천				
괴산증평				
음 성				
단 양				
계				

<작성요령>

- 1인당 지원금액 비교란에 명시

7-1. 향후 지원 확대 계획

8. 지역교육청 순회코치 및 예비 보조 실태 현황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 : 명, 원)

시·군별	순회코치		여비보조 현황			비고
	종목수	인원	소속교	교육청	계	
청 주						
충 주						
제 천						
청 원						
보 은						
옥 천						
영 동						
진 천						
괴산증평						
음 성						
단 양						
계						

8-1. 이에 대한 문제점

9. 외국어교육원 운영 현황 : 도교육청

(단위 : 명, %)

시·군별	총학생수			이용수			이용률			비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증평										
음성										
단양										
계										

9-1. 이에 대한 개선점

10. 교육청 업무차량 교체 현황 : 지역교육청

(단위 : 년)

시·군별	차종	구입시기	교체계획	비고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증평				
음성				
단양				
계				

11. 교육감 공약사항 에어컨 보급실태 현황 : 지역교육청

시·군별	유·초·중·고 총학급수	설치 학급수	설치율(%)	비고
청 주				
충 주				
제 천				
청 원				
보 은				
옥 천				
영 동				
진 천				
괴산증평				
음 성				
단 양				
계				

12. 신설학교 설립 요인 조사 현황 : 지역교육청

시·군별	지역실태	신설이 필요한 이유	비고
청 주			
충 주			
제 천			
청 원			
보 은			
옥 천			
영 동			
진 천			
괴산증평			
음 성			
단 양			
계			

<작성요령>

- 학교신설요인 발생지역 기재
- 진천교육청 상산초 ()학급 ()명
만송초 ()학급 ()명

13. 지방누수공사 보수비 집행 내역 : 지역교육청

(단위 : 원)

시·군별	지방보수 공사비 집행내역				비고
	2005년		2006년		
	보수학교수	집행금액	보수학교수	집행금액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중평					
음성					
단양					
계					

14. 여성 교직원을 위한 담당관제 신설 문제에 대하여 : 도교육청

가. 도내 교직원 성별 구성 현황

구분	교원														
	유			초			중			고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직속 포함)															
학교															
계															

구분	일반직			기능직			비고
	남	여	계	남	여	계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직속 포함)							
학교							
계							

나. 도교육청에 여직원 담당관 배치 계획은

다. 여성 공무원의 권리보호와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담당관을 둘 계획은 없는지

□ 요구위원 : 박노성 위원

1. 1교사 1학생결연 실적 : 도교육청, 청주·제천·옥천교육청

(단위 : 천원)

교육청명	연도별	학교급별	결연학생수	결연교사수	지원금(품)액	비고
	2004	초				
		중				
		고				
		계				
	2005	초				
		중				
		고				
		계				
	2006	초				
		중				
		고				
		계				

<작성요령>

- 작성기간 : 2004~2006. 8. 31
- 지역교육청 : 초·중학교분 작성
- 도교육청 : 도내 고등학교분 작성

1-1. 교육청별 결연실적 : 도교육청, 청주·제천·옥천교육청

교육청별	구분	총인원수	결연인원수	지원금(품)액	비고
	장학관 이상				
	사무관 이상				
	장학(연구)사 이상				
	6급 이상				
	계				

2. 교육전문직(장학관·연구관 이상)임용현황(정년1년 이하 임용자) : 도교육청

(단위 : 명)

연도별	정년1년 이하 임용자		전문직 경력		비고
	인원	근무기관 (부서명)	유	무	
2004					
2005					
2006					
계					

<작성요령>

- 정년1년 이하 임용자가 있을시 근무기관(부서)명을 기재
- 전문직(장학사, 교육연구사 등)경력이 없는 장학관, 연구관의 근무기관(부서)기재

3. 초·중등 교육전문직 현황(2006. 8. 31현재) : 도교육청

가. 충청북도교육청 전문직 현황

(단위 : 명)

구분	국장	과장	장학(연구)관	장학사	연구사	계	비고
초등							
중등							
계							

나.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전문직 현황

(단위 : 명)

구분	기관장	장학(연구)관	장학사	연구사	계	비고
초등						
중등						
계						

※ 초·중등 전문직 정원현황 공문사본 첨부

4.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현황(취임이후 2006. 8월말) : 도교육청

(단위 : 천원)

순	공 약 사 항	소요예산	집행예산	추진성과 (%)	비고
1					
2					
3					
·					
·					
계					

<작성요령>

- 비예산 사업은 공란으로 처리

5. 교원인사 발령 현황 : 도교육청

가. 타 시·군에서 청주시 교장 전보 내신자 발령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별	발령자 인원						비고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내신자수	발령자수	내신자수	발령자수	내신자수	발령자수	
초등	2005							
	2006							
중등	2005							
	2006							
계	2005							
	2006							

나. 타 시·군에서 청주시 전보내신 교장 미발령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별	월	3년 이상 근무자	2년 이상 근무자	1년 이상 근무자	계	비고
초등	2005	3					
		9					
	2006	3					
		9					
중등	2005	3					
		9					
	2006	3					
		9					
계	2005	3					
		9					
	2006	3					
		9					

<작성요령>

- 3년이상 교장 경력자 중 미발령자는 비고란에 사유 기재

다. 타 시·군에서 청주시 교감 발령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별	월	내신자수	발령자수	비고
초등	2005	3			
		9			
	2006	3			
		9			
중등	2005	3			
		9			
	2006	3			
		9			
계	2005	3			
		9			
	2006	3			
		9			

<작성요령>

- 작성연도 : 2005~2006. 현재

6.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현황(2005~2006. 현재)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 : 천원)

교육청명	연도별	지원기관명	지원일자	지원 사업명	지원금액	비고
	2005					
	2006					
	계					

<작성요령> 도교육청은 도내 전체현황 작성

7. 사립학교 지원현황에 대하여 : 도교육청

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현황 및 법인부담금 현황(2005, 2006년도)

(단위 : 천원)

학교명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재정결함 보조금		법정부담액			비고
				법인 부담금		학교 자체수입		소계							
	인건비	운영비	소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자립도	금액	지원율	법정액	부담액	부담율	
계															

<작성요령>

- 학교별로 작성하고 학교급별 총괄분 별도 작성
- 작성기간 : 2005~2006.현재
- 연도별 별지 작성

나. 향후 지원 계획

다. 사립학교 법인 전입금 자체재원 발굴 현황

8. 유치원 독립원사(단설유치원)건립 추진 현황 : 제천교육청

유치원명	개원시기	설립규모	위 치	소 요 액		
				국고	지방비	계

<작성요령>

- 작성기간 : 2006. 현재

9. 기초학습부진학생책임지도제(기초학력책임제) 운영 현황 : 옥천교육청

연도별	학교급별	운영 현황				비 고
		전체학교수	운영학교수	학생수	대상아수	
	초					
	중					
	계					

<작성요령>

- 작성기간 : 2005~2006.현재
- 우수사례 제출 : 2교(초등학교 1교, 중학교 1교)

10. 청주교육청 청사 이전 신축 추진계획(2006. 현재) : 청주교육청

□ 요구위원 : 서수웅 위원

1.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운영 현황 : 도교육청

(단위 : 명)

시·군별	학교급별	입 교 학 생 현 황				비 고
		2006. 1학기		2006. 2학기(예정)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초					
	중					
	고					
	계					

2. 원어민 교사 현황(2006년 현재) : 도교육청

(단위 : 명)

시·군별 (기관별)	학교급별	원어민 교사(영어)	비 고
	초		
	중		
	고		
	계		
본 청			
직속기관			

<작성요령>

- 본청 및 직속기관도 작성

3. 2007~2009년 농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 도교육청

가. 2007~2009년까지의 농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학교수

(단위 : 학교수)

교육청별	통·폐합학교수							연도별 통·폐합 예정학교수				비고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2007	2008	2009	계	

나. 2000~2006년 통·폐합 학교 활용현황

다. 2007~2009년 통·폐합 예정학교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라. 2007~2009년 통·폐합학교 활용 계획

4. 2007년도 이후 학교급식 방법 직영으로의 전환 계획 및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 도교육청

가. 학교급식 운영 현황

(단위 : 학교수)

시·군별	급식운영 형태									비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수	직영	위탁	학교수	직영	위탁	학교수	직영	위탁	
계										

<작성요령>

○ 작성기간 : 2006년 현재

나. 2007년 이후 학교급식방법 직영으로의 전환계획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작성요령>

○ 연도별 학교명 기재

다. 예산확보 대책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소요액	확보액 (예정)	소요액	확보액 (예정)	소요액	확보액 (예정)	소요액	확보액 (예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5. 교원의 업무경감 및 사교육비 경감 지원을 위한 충북교육청 교수학습지원센터의 교수-학습지원 탑재자료 현황과 월별 학교급별 활용건수 : 도교육청

학교급별	탑재자료 및 월별 활용 현황			비고
	탑재건수	월별	활용건수	
초		.		
중		.		
고		.		

<작성요령>

○ 작성기간 : 2006년 현재

6. 2006. 8. 31 현재 영재교육 현황과 영재교육의 다양화·활성화 방안 :
도교육청, 청주·제천·옥천교육청

7. 각급 학교의 교실수업 개선과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하여 지원한 도교육청 혁신 과제와 실천현황(교육혁신) : 도교육청

8. 초·중등 연구사 및 장학사 배정 현황 : 도교육청

(단위 : 명)

교육과학연구원							단재교육연수원							비고
초등		중등		계		직원수	초등		중등		계			
연구사	장학사	연구사	장학사	연구사	장학사		연구사	장학사	연구사	장학사	연구사	장학사		

<작성요령>

- 직원수는 전체 직원수 기재

9. 단재교육연수원의 운영관리 현황에 대하여 : 도교육청

가. 강사 관리 카드의 공유여부

나. 연수생의 연수 성적이나 이수기록 조회 가능 여부

다. 연구사와 장학사의 역할 차이

라. 타 연수원 강사수당 지급현황(2006년도)

(단위 : 천원)

타 연수원 지급 현황								단재교육연수원		비고
부산		강원		경기		전북		구분	강사수당	
구분	강사수당	구분	강사수당	구분	강사수당	구분	강사수당			

<작성요령>

- 구분 : 교수, 교장, 교감, 교사 등으로 작성
- 강사수당은 시간당 강의기준 작성

10. 청주교육청의 사이버 장학을 통한 장학방법 및 장학내용 : 청주교육청

□ 요구위원 : 이상일 위원

1. 유치원 교육이 의무 교육화 되는 것을 전제로 단설 공립유치원 설립 필요성과 관련하여 : 도교육청

가. 도내 단설유치원 현황

교육청명	유치원명	설립연도	학급수	원아수	교직원수

나. 향후 설립 계획

지7역별	2007	2008	2009	2010
청 주				
충 주				
...				
...				
계				

다. 유아교육담당 장학사가 배치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한 배치 계획은

라. 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2. 수행평가의 보완책으로 지필고사를 통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점수로 표시하는 교과학습 성취 상황을 가정통신문으로(통지표) 전달하는 것을 기대하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은데 이에 대하여 :도교육청

가. 지필고사로 학업성적을 측정하고 있는 학교현황

교육청명	연도별	관내 초등학교수	지필고사 측정학교수			비고
			매월실시	중간고사	학기말	
	2005					
	2006					

<작성요령>

○ 작성기간 : 2005~2006년 현재

나. 성적통지표 발송시 학업성취도 수준을 점수 또는 A, B, C, D, E등으로 기재하는 학교현황

교육청명	초등학교수	점수표기 학교수	A,B,C,D,E 등으로 표기하는 학교수	비고

<작성요령>

○ 작성기간 : 2006년 현재

3. 현재 일선학교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이라 생각되며, 학교 폭력 문제는 이제 단순한 학교 교육의 문제를 뛰어 넘어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하여야 함과 관련하여 :도교육청

가. 2004~2006년 학교폭력으로 문제가 되어 학칙에 의하여 처벌된 건수 및 처리 결과

교육청명	학교급별	전체 학교수	처벌 처리 현황			비고
			학교수	건수	처리결과	
	초					
	중					
	고					
	계					

<작성요령>

○ 2004~2006 연도별 별지 작성

나. 문제가 확대되어 검찰이나 경찰에 입건되어 고발된 건수 및 처리 결과

교육청명	학교급별	전체 학교수	고발 처리 현황			비고
			학교수	고발건수	처리결과	
	초					
	중					
	고					
	계					

<작성요령>

- 2004~2006 연도별 별지 작성

다. 학교 폭력 예방 대책은

4. 공·사립 학교간 균형 발전을 위하여 낙후된 사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 도교육청, 청주·제천교육청

가. 사립학교 도서실 현대화 사업 실적(2004~2006년도)

교육청명	학교급별	추진실적			미 추진된 학교의 향후 연도별 추진계획				
		총학교수	추진된 학교수	비율(%)	2007	2008	2008	...	계
	초								
	중								
	고								
	계								

<작성요령>

- 2004~2006 연도별 별지작성
- 2004~2005년도는 추진실적만 작성(향후 추진계획 작성 생략)

나. 사립학교 과학실 현대화 사업 실적(2004~2006년도)

교육청명	학교급별	추진실적			미 추진된 학교의 향후 연도별 추진계획				
		총학교수	추진된 학교수	비율(%)	2007	2008	2008	...	계
	초								
	중								
	고								
	계								

<작성요령>

- 2004~2006 연도별 별지작성
- 2004~2005년도는 추진실적만 작성(향후 추진계획 작성 생략)

다. 냉방기 보급 현황(사립)

교육청명	학교 급별	교 실			특별교실			관리실		
		총 교실수	보유		총 교실수	보유		총보유 실수	보유	
			실수	비율		실수	비율		실수	비율
	초									
	중									
	고									
	계									

교육청명	학교 급별	행 정 실					비고
		총보유 실수	보유		미보유		
			실수	비율	실수	비율	
	초						
	중						
	고						
	계						

<작성요령>

- 보통교실 :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
- 관리실 : 교장실, 교무실

라. 사립학교 과원특채 현황 및 현재 공립학교에 파견된 교사수

교육청명	학교급별	정원	현원	증감인원수		공립 파견 교사수	비고
				과원	부족인원		
	초						
	중						
	고						
	계						

<작성요령>

- 도내 사립학교 전체 : 도교육청

5. 초등학교에서 봄 또는 가을에 실시하는 운동회가 대부분 학교에서는 자체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하고 전직원이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학교에서는 행사 대행 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 지역교육청

가. 초등학교 운동회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교육청명	연도별	전체학교수	학교수			비고
			자체 실시교	위탁 실시교	미실시교	

<작성요령>

- 작성연도 : 2004~2006년 현재
- 작성기관 : 지역교육청

나. 초등학교에서 행사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소요 경비 현황

교육청명	연도별	전체학교수	학교수		비고
			위탁 실시교	소요액	

<작성요령>

- 작성연도 : 2004~2006년 현재
- 작성기관 : 지역교육청
- 소요액 : 지역교육청별 평균액 기재

다. 학교에서 직접 지도할 때 소요 경비 현황

교육청명	학교급별	전체 학교수	학교수		비고
			자체 실시교	소요액	
	초				

<작성요령>

- 작성연도 : 2004~2006년 현재
- 작성기관 : 지역교육청
- 소요액 : 지역교육청별 평균액 기재

第195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제19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41
II. 제19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45
III. 부 록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249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6년 9월 19일 (화요일) 11시 21분

議事日程 (제195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審査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21분 개의) 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

1.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에 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것입니다.

지난 4대 때까지는 어떻게 위원장, 간사를 선출했느냐 하면 위원별 성명순서대

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조례, 예결, 청원, 징계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마다 위원장, 간사, 위원장, 간사 그래서 위원장이 돌아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간사는 다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해서 4년간 임기를 마칠 때는 거의 위원장을 하는 순서가 또 횟수가 거의 같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5대 전반기에도 그렇게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한 가지 감사소위원회는 과거에 전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원이 구성되는 첫 해 감사는 경력이 있는 위원님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이 첫 해는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 네 번째 해는 위원님들이 그것은 호선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감사는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4년간 우리가 4번을 하는데 대개 첫 번째는 다선 위원 중에서 연세가 많은 분이 했고 나머지 3번은 위원님들께서 그때 호선을 해서 선출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좋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5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전반

기 소위원회 구성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위원회는 위원님들 가나다 성명순서대로 하고 감사소위원회는 전례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는 가나다순에 의해서 위원장은곽정수 위원님, 간사는 김병우 위원님이 맡으시는 게 첫 번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장에 곽정수 위원님, 간사에 김병우 위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 곽정수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곽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신 후에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곽정수

처음 맡는 소위원회 위원장이라 얼떨떨합니다. 열심히 한번 우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훌륭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출의견

(11시 27분)

● 위원장 곽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용 위원

가나다순에 의해서 금방 얘기하신 대로 김병우 위원님이 맡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 위원장 곽정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병우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급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별첨 1)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9월 20일 11시에 제2차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3. 의사일정결정의견

(11시 28분)

● 위원장 곽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견을 상정합니다.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과 내일 2일간으로 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곽정수, 간사 김병우,

위 원 김부웅, 박노성, 서수웅, 이상일.

0 출석공무원 : 2명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 부 록

-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6년 9월 20일 (수요일) 11시 02분

議事日程 (제195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審查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개의)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걱정수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걱정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육위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위원회에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이에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기획관리

맞도록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4조 제1항의 용어의 정의 및 보상금 지급 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 안 제9조 제2항의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안 제12조 제2항의 심의위원장의 직무중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하여 법령에서 통상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 신청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병우

우선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법령에 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한 덩어리로 띄어쓰기 하지 않고 이렇게 붙여쓰다가 지금 일부 띄어쓰는 추세로 가는 겁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그렇습니다.

● 간사 김병우

그걸 일정하게 반영한 거죠?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예

● 위원장 곽정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곽정수, 간사 김병우,

위 원 김부웅, 박노성, 서수웅, 이상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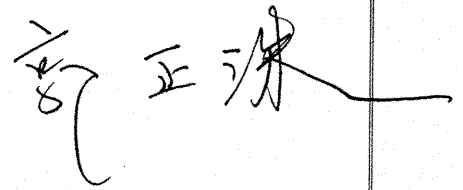
0 출석공무원 : 2명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제19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06. 10. .

위원장 곽정수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consisting of stylized Korean characters '곽정수'.

(별첨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9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06. 9.19. (화)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06. 9.20. (수) 11:00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